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61
------------	-------

발의 연월일 : 2019. 5. 22.

발의자 : 김세연 · 이학재 · 김무성

문진국 · 정갑윤 · 정운천

원혜영 · 김명연 · 유기준

김현아 · 김상희 · 하태경

의원(12인)

제안이유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특히,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말기환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제도는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상도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을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8조).
- 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 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8조에”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제8조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말기환자등”을 “말기가 임박하거나 예견되는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기환자등은”을 “말기가 임박하거나 예견되는 환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를 “담당의사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 수립) ①</p> <p>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u>제8조에</u>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 략)</p> <p>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u>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생 략)</p> <p>③ 위원장은 <u>보건복지부차관이</u> 된다.</p>	<p>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 수립) ①</p> <p>-----</p> <p>-----</p> <p>-----교</p> <p><u>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제8조에</u> -----</p> <p>-----</p> <p>-----</p> <p>-----</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u>종합계획</u> -----</p> <p>-----<u>국무총리</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무총리가</u>-----.</p>

	<p><u>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u></p> <p><u>3.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u></p>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생략)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u>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u>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2. ----- ----- ----- ----- ----- -----담당의사가----- -----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